

#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2. 5. 15 | 통권 제20호(2012-08) |

## 음식배달 근로자의 근로실태와 산업재해 현황

### [ 요약 ]

- 음식배달 업무는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독특한 노동형태임. 음식배달업은 음식을 주문한 사람에게 음식이 식거나 굳기 전에 배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 배달’을 판매전략으로 삼는 경우가 있음. 이때 배달에 쓰이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는 막히는 길을 빨리 갈 수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음식배달 근로자들은 잦은 이직, 장시간근로, 교통사고 노출 등 열악한 근로실태와 산업안전에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 또한 많은 경우 5인 미만의 이른바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음.
  - 휴게시간이나 휴일 등을 보면, 음식배달업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그다지 따르지 않는다고 여겨짐. 5인 미만 사업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준수와 고용·산재보험 적용은 의무임을 사업주가 인식하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안전보건교육’이나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안전법 일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동법 제23조(안전조치)에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작업에 ‘도로에서 수행되는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함.
- 이 밖에 배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제도의 홍보 강화, 사업주와 배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강화, 정기검진 실시, 안전보호구 개발과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지원이 필요함. 또한 ‘신속배달’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안전배달’을 중시하는 문화가 사회에 정착되어야 할 것임.

## 문제 제기

- 2011년 피자 배달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음식 배달 근로자의 교통사고 대책이 논의되었음. 일부 피자업계는 30분배달보증제를 폐지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사고 예방 캠페인, 안전모 착용률 제고, 운행 문화 개선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사업주의 배달속도 경쟁 영업방식을 개선하기란 쉽지 않음.
- 배달근로자가 담당하는 배달이라는 업무는 이동성이 큰 노무임. 그러므로 배달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임은 명확함. 그러나 배달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은 5인 미만의 이른바 영세 사업장임. 이 때문에 이들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적용예외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배달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노력을 실제로 독려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즉 산업재해는 사후 보상보다 사전적 예방이 우선임에도 오로지 사후 보상에만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임.
- 게다가 영세 사업장이다 보니 사회보험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실제로 배달근로자가 교통사고의 피해로 요양을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등 사후 보상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함.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은 2011년 10월 중에 서울·인천·경기 일원의 중식, 피자, 치킨 등 배달이 주로 이루어지는 음식점업 사업주 344명과 근로자 471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sup>1)</sup> 조사 내용은 배달관련 사고경험 및 처리방식, 안전을 위한 대책, 애로사항 및 배달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언 등임. 그리고 사업주에게는 영업점 현황, 배달 현황, 배달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실태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는 배달근로 이력, 임금 및 근로실태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였음.

1) 조사지역을 서울·인천·경기로 한정된 이유는 조사의 용이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울·경기, 충청, 강원, 전라, 경상 등 5대 권역의 대도시에서 심층면접을 실시해 본 결과 지역에 따른 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임. 배달을 주로 하는 음식점업의 모집단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전화번호부에서 배달관련 음식점업의 사업장 수를 파악한 뒤 이를 중식, 치킨, 피자, 기타의 네 범주로 구분하여 표본을 할당하였음. 따라서 이 조사 결과가 반드시 배달관련 음식점업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책 판단을 위한 정보(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 배달근로자의 특성과 근로실태

- 음식배달 근로자는 주로 저학력의 젊은 남성이었음.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sup>2)</sup>를 보면 전체 근로자의 92.0%가 남성이고, 10대와 20대가 55.8%임. 연구원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은 72.6%가 10대와 20대였으며, 전체의 92.6%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었음.
- 음식배달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대체로 짧게 나타남.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88.2%, 본 연구원 자체 설문조사 결과 72.0%였음.
- 음식배달 근로자들의 취업경로를 살펴보면, 친구나 지인, 친인척 등을 통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50.9%, 생활정보지, 인터넷사이트, 길거리 광고 등을 통하는 경우가 48.3%로 인력사무소·인력시장,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 공식적인 알선경로를 통해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 배달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도 채용경로는 유사하였음.

-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 고용될 때 근로계약서, 야간 연장근로 동의서를 작성한 비율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서 38.6%, 야간 연장근로 동의서 20.2%임. 제출한 서류의 경우 운전면허증 82.8%, 주민등록등본 78.6%, 보건증 47.6%, 이력서 39.5%로 나타남. 이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음. 다만 업종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서 대형 프랜차이즈가 많은 피자업이 노동관련 서류작성 및 제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배달근로자는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었음.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일주일 평균 6일 가까이 일하고, 22.5%의 근로자는

〈표 1〉 노동법 관련 제반 서류 작성 및 제출 비율

(단위: 명, %)

	사례수	근로계약서	야간 연장근로 동의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보건증	이력서
사업주	344	39.0	23.8	79.4	74.7	42.7	39.0
근로자	471	38.6	20.2	82.8	78.6	47.6	39.5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

2) 지역별 고용조사는 매년 전국의 175,000가구의 고용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를 얻을 수 있음. 이 조사에서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동시에 살펴보면, 음식배달업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음. 즉 산업소분류에서 음식점업(561)이고 동시에 직업소분류에서 배달원(922)으로 분류된 사람을 음식배달업 종사자라고 추정할 수 있음.

휴무일이 하루도 없었음. 또한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6% 수준이었으며, 56%는 알아서 일이 한가할 때 쉬다고 답했고, 아예 휴게시간이 없다고 답한 경우도 38%에 달했음. 별도의 휴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50분 정도에 불과하였음. 이처럼 높은 근로강도는 배달근로자의 근속기간을 짧게 하고, 사업주가 배달근로자를 구하기 어렵게 만든

는 배경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음식배달업 근로자는 하루에 주중 약 20건, 주말 약 30건 정도를 배달하고 있었음. 업종별로 보면 근로자 1인당 하루 배달건수는 중식이 가장 높은데, 주중 25건 이상, 주말 36건 이상이었음. 배달은 평일보다는 주말에, 낮보다는 저녁시간대에 많이 몰리고 있었으며, 배달시간은 대체로 20분 이내였음.

〈표 2〉 음식배달 근로자의 근로실태

(단위:명, %)

	사례수	주 평균 근로 일수	하루 평균 근무 시간	하루 평균 배달건수		휴게시간 유무			휴무일 있음	휴무일 있는 경우			
				주중	주말	정해진 휴게 시간 있음	정해 지지 않았고, 배달 없을 때 쉬	별도의 휴게 시간 없음		사례수	월평균 휴일 수		
사업주	전체	344	5.88	8.79	20.4	28.9	5.5	51.5	43.0	77.3	266	4.12	
	업종	치킨	87	5.79	7.11	18.2	26.6	2.3	50.6	47.1	72.4	63	4.03
		중식	84	6.24	10.50	27.1	39.4	2.4	61.9	35.7	81.0	68	3.54
		피자	85	5.47	8.73	19.3	29.4	10.6	55.3	34.1	83.5	71	4.82
		기타	88	6.00	8.89	17.5	24.8	6.8	38.6	54.5	72.7	64	4.06
근로자	전체	471	5.87	9.03	20.9	31.2	5.9	56.3	37.8	77.5	365	3.55	
	업종	치킨	116	5.95	8.08	19.9	30.0	0.9	55.2	44.0	70.7	82	3.74
		중식	118	6.08	10.31	25.3	36.1	2.5	56.8	40.7	80.5	95	2.92
		피자	118	5.46	8.42	17.5	27.6	16.1	54.2	29.7	72.0	85	4.20
		기타	119	5.97	9.29	21.1	31.3	4.2	58.8	37.0	86.6	103	3.4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

〈표 3〉 음식배달 근로자의 급여실태

	전체 (명)	시급 (원)	일급 (원)	월급 (만 원)
사업주	344	5,179	54,417	132
근로자	471	5,150	59,667	13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



- 여기에서 표는 생략하지만, 중식업은 월급제로 급여가 지급되는 편이며, 피자나 치킨 배달의 경우는 시급제와 월급제가 반반씩이었음. 급여는 중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피자업이 낮았음. 이는 중식은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사자를 월급으로 고용하고 있고, 피자업은 10대, 20대 초반 근로자를 시급으로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사업장은 35.2%였음. 상대적으로 치킨과 피자를 배달하는 음식점에서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았음. 교통사고 발생 사업장의 경우에 3년 동안 4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매년 적어도 1건 이상의 사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산업안전 · 산업재해 실태

- 지난 3년간 배달근로자가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

- 경험한 교통사고 가운데 사고 정도가 가장 컸던 사고를 회상하게 하여 배달근로자가 가해자였는지 아니면 피해자였는지를 알아보면, 사업주의 43.0%는 배달근로자가 피해자라고 하였고, 쌍방과실이라고 한 경우는 24.8%임. 이는

〈표 4〉 배달 중 교통사고 발생 실태

(단위 : 명, %)

	사례수	교통 사고 발생	교통사고의 가해 여부					교통사고의 종류						
			사례수	피해자	쌍방 과실	가해자	혼자서 일어난 사고	사륜차와의 사고	이륜차와의 사고	주행 중에 넘어짐	물건, 장애물 등에 충돌	사람과의 사고		
사업주	전 체	344	35.2	121	43.0	24.8	19.8	12.4	68.6	11.6	10.7	5.8	3.3	
	업종	치킨	87	40.2	35	42.9	17.1	25.7	14.3	68.6	5.7	8.6	11.4	5.7
		중식	84	35.7	30	33.3	36.7	16.7	13.3	63.3	13.3	16.7	3.3	3.3
		피자	85	38.8	33	57.6	24.2	9.1	9.1	69.7	15.2	6.1	6.1	3.0
		기타	88	26.1	23	34.8	21.7	30.4	13.0	73.9	13.0	13.0	-	-
근로자	전 체	471	27.6	130	47.7	20.8	13.1	18.5	60.0	11.5	11.5	10.8	6.2	
	업종	치킨	116	23.3	27	44.4	18.5	11.1	25.9	59.3	7.4	11.1	22.2	-
		중식	118	30.5	36	55.6	22.2	8.3	13.9	61.1	19.4	11.1	5.6	2.8
		피자	118	37.3	44	40.9	27.3	15.9	15.9	61.4	9.1	13.6	2.3	13.6
		기타	119	19.3	23	52.2	8.7	17.4	21.7	56.5	8.7	8.7	21.7	4.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

주로 사륜차를 대상으로 하여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비율로 본다면 낮은 편이나, 이륜차와 연계된 사고, 주행 중 넘어짐, 물건·장애물 등과 충돌, 심지어 대인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배달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교통사고 이외에 경험하는 업무상 재해로서는 넘어지거나 물건·시설 등에 충돌하는 경우였음. 많지는 않았으나 사업장이 음식제조와 관련되어 있어서 찰림·베임, 화상, 피부 질환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음. 피자업의 경우는 배달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음식제조 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편에 속해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배달업무에서 필수적인 것은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착용임. 먼저 사업주의 6할 정도는 안전모·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었고, 25.3%는 수시로 권장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하지만 2%에 지나지 않으나 배달근로자의 판단에 일임한다는 경우도 있었음. 사실 배달업무는 사업주의 관찰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안전모·보호장구의 착용을 일일이 간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는 사업주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특히 10대 배달근로자의 경우, 배달업무 중 안전모 착용 준수율이 떨어지고 있음. 특이하게도 30대 초반의 배달근로자도 비슷하였음. 앞에서 살펴본 사고경험도 이들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 그리고 현재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에 배달근로자 본인에게 벌금이 부과됨으로써 안전모·보호장구 착용이 배달근로자 본인의 책임으로만 귀결되는 문화가 형

〈표 5〉 교통사고 이외의 업무상 재해 (배달근로자 응답)

(단위: 명, %)

	사례수	넘어짐	충돌	찰림 및 베임	무리한 신체활동	화상	피부 질환	기계 등에 끼거나 눌림	폭행	감전/방사선에 의한 손상	없음	
전 체	471	58.39	33.97	11.46	6.79	5.10	4.88	1.06	0.85	0.42	19.53	
업종	치킨	116	68.10	30.17	6.03	8.62	2.59	6.03	1.72	0.86	-	14.66
	중식	118	56.78	43.22	12.71	6.78	6.78	6.78	0.85	1.69	-	16.95
	피자	118	46.61	27.97	15.25	3.39	6.78	4.24	0.85	-	-	30.51
	기타	119	62.18	34.45	11.76	8.40	4.20	2.52	0.84	0.84	1.68	15.9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

성되어 있음. 이 또한 사업주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임.

- 배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었음. 사업

주의 약 70%는 안전운행을 말로만 하는 정도이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배달근로자의 응답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음. 심층면접 조사에서도 사업주가 배달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거의 없었음.

〈표 6〉 안전모 · 보호장구 착용 권장 여부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사업주 응답)

(단위: 명, %)

	사례수	안전모 · 보호장구 착용 권장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반드시 착용하도록 함	수시로 권장하는 편임	가끔 권장하는 편임	배달원의 판단에 일임함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	가끔 교육 실시	별도 교육은 없지만, 안전운행 강조	관심 없음
전 체	344	63.7	25.3	9.0	2.0	12.5	19.8	65.7	2.0
치킨	87	59.8	24.1	12.6	3.4	5.7	21.8	71.3	1.1
중식	84	59.5	27.4	11.9	1.2	7.1	13.1	77.4	2.4
피자	85	75.3	21.2	3.5	-	27.1	20.0	48.2	4.7
기타	88	60.2	28.4	8.0	3.4	10.2	23.9	65.9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

〈표 7〉 배달업무 중 안전모 · 보호장구 착용 여부 (배달근로자 응답)

(단위: 명, %)

	사례수	안전모 착용 여부					보호장구 착용 여부					
		반드시 착용	대부분 착용	가끔 착용	대부분 착용 안함	안전모 없음	반드시 착용	대부분 착용	가끔 착용	대부분 착용 안함	보호 장구 없음	
전 체	471	27.2	54.1	11.7	6.2	0.8	13.8	36.3	18.0	13.4	18.5	
업종	치킨	116	25.9	59.5	10.3	4.3	-	9.5	43.1	16.4	15.5	15.5
	중식	118	24.6	57.6	15.3	2.5	-	9.3	38.1	14.4	15.3	22.9
	피자	118	34.7	45.8	9.3	7.6	2.5	26.3	33.1	16.1	11.0	13.6
	기타	119	23.5	53.8	11.8	10.1	0.8	10.1	31.1	25.2	11.8	21.8
연령	19세 이하	70	18.6	48.6	22.9	10.0	-	10.0	32.9	11.4	25.7	20.0
	20대 초반	174	27.0	57.5	9.2	4.6	1.7	10.9	33.3	26.4	10.9	18.4
	20대 후반	98	20.4	58.2	13.3	7.1	1.0	15.3	39.8	16.3	13.3	15.3
	30대 초반	41	34.1	39.0	12.2	14.6	-	12.2	36.6	14.6	7.3	29.3
	30대 후반	35	37.1	57.1	2.9	2.9	-	28.6	34.3	11.4	11.4	14.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



- 사고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약 70% 가까이 되었음. 상해보험은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수치였으며, 종합보험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음. 가입은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업주도 많은 편이었음.

- 배달근로자의 경우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30%에 미치지 못하였음. 하지만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미가입자가 절반 수준이었음.

**박찬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cpark@kli.re.kr / 02-3775-5575

**이승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eesy@kli.re.kr / 02-3775-5559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http://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김승택 / 편집인: 장흥근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http://www.kli.re.kr)